

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서

“경산시”,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시의회”, “경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산상공회의소”, “경북테크노파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 “경산소방서” (이하 “협약기관” 이라 한다)는 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교육발전특구”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협력사항) 각 협약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및 교육 발전전략 수립
2.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및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지원 확대
3.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

제5조(비밀 유지) 각 협약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며,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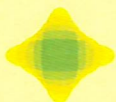
제6조(신의성실) 각 협약기관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7조(효력 발생 및 변경)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협약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5월 17 일



MY UNIVERSE
GYEONGSAN

경 조 산 시 장
조 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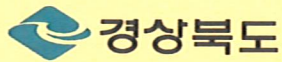
조 현 일



경상북도교육청

경 상 북 도 교 육 감
입 종 식

유 증 직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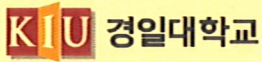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박경화

박경화



경산시의회
박순득

박순득



경일대학교
정현총장

정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성한총장

성한



대구대학교
박순진총장

박순진



대구한의대학교
변창총장

변창



영남대학교
최외총장

최외



경산상공회의소
안태영회장

안태영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원장

하인성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윤철석장

윤철석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
이현수학

이현수



경산소방서
박기형장

박기형